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최 재 황(Jae-Hwang Choi)*
곽 승 진(Seung-Jin Kwak)**
김 정 택(Jeong-Taek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및 납본 요소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요소
Ⅳ.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Ⅴ.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납본체계, 납본요소, 가이드라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process on online digital materials and use of the deposited materials both in National Digital Libraries and other places. At present, two Acts -- 'Act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Act on Partially Revised Library Law' -- are still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s in this study, advanced countries' legal deposit Acts in this area are searched and investigated. Also, in order to present various opinions from many parties immediately interested in the guidelines and Acts, survey, visitation, and consultancy methods are used.

Keywords: Online Digital Material, Legal Deposit, Legal Deposit System, Elements of Legal Deposit, Guideline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hoi@knu.ac.kr)(제1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jkwak@cnu.ac.kr)(공동저자)
*** 배재대학교 도서관 사서(kjt@pcu.ac.kr)(교신저자)
• 접수일: 2009년 2월 9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www.kci.go.kr

Ⅰ. 서 론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개발과 전자출판의 출현, 출판도구로써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발표에 따르면 1998년에 존재했던 인터넷 사이트 중 44%가 1년 후에 사라졌으며, 2002년 인터넷 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1] 이와 같이 인쇄자료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납본(legal deposit 또는 mandatory deposit)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하여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납본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납본 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정보자료의 주종이 되어왔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납본제도는 1990년대 이후 디지털자료가 급증하면서 포괄적 국가문헌의 수집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위한 현행 납본제도의 보완 또는 디지털자료에 적합한 새로운 납본제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디지털자료의 이용과 보존 가치가 증대되면서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다년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2]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출판된 디지털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 및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현행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디지털 문화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그리고 현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시장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

1) The Library of Congress Home page, 〈http://www.loc.gov/acq/devpol/webarchive.html〉 [cited 2008. 11. 10].
2) 〈http://www.oasis.go.kr〉.

www.kci.go.kr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디지털자료 관련 납본법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설정하였다.

셋째,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납본자료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법조계, 저작권계, 학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법률(안) 및 문헌,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내용, 납본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집단의 자문 내용에 기반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자료와 온라인 디지털자료

디지털자료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처리된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디지털자료 중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이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한정한다.

② 납본 기관

납본 제도는 출판사 등이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해당 출판물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때 출판사는 납본 주체가 되며 납본을 받는 지정된 기관은 납본 기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납본 기관이란 용어는 출판사 즉, 납본 주체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납본하는 출판물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Ⅱ. 선행 연구

윤희윤은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체계, 납본 주체와 피 납본 기관, 대상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3)]

서혜란은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며,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현재의 납본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에 대한 주요 국가의 최근 동향을

3)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pp.185-207.

www.kci.go.kr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4)]

한혜영은 인터넷상의 웹 자원, 전자책 등과 같은 온라인 형식의 전자출판물을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납본제도의 보완과 납본시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혜영은 이 연구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 제도의 보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납본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자출판물의 납본 절차, 접근,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전자출판물 납본을 위해 요구되는 전자출판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과 시스템 구축 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5)]

김보현, 선명순은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외국의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사례와 한국의 납본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법체계 개선, 납본 주체 및 피납본기관의 명확한 규정, 납본대상 자료의 범주 설정, 전자출판물 납본자료 선정방안 등 한국에서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6)]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은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음악 및 전자책 분야 저작권 관련 단체의 디지털자료 유통 현황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7)]

국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4장에서 참조되는 각국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관련 법령으로 대신한다.

Ⅲ.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및 납본 요소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처리하여 유통시키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이미지, 이러닝, 웹페이지, 게임, 소프트웨어로 대분류하고

4)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373-399.
5) 한혜영,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51-79.
6) 김보현, 선명순,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2007), pp.119-142.
7) 곽승진 등,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65-83.

www.kci.go.kr

자료의 특성, 제작형태 및 사용매체에 따라 유형별로 〈표 1〉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표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및 정의

구 분			정 의
전자출판	전자책	e-Book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ISBN이 부착된 종이책을 디지털화시킨 전자책 또는 출판 시작단계부터 디지털화시킨 전자책(디지털 교과서 포함)
		오디오북	북 디자인에 의하지 않고 MP3기술과 음성TTS 기술 등을 활용하여 녹음작업으로 만든 전자책
		모바일북	핸드폰이나 PMP 같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책
	전자저널	학술저널	학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저널
		일반저널/웹진	학술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서지, 통계, Fact DB 등의 웹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전		전자수첩에 사전 콘텐츠를 결합시킨 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대학에서 발간된 학위논문을 디지털화시킨 디지털 학위논문
	보고서		리포트, 독서감상문 등 개인 저작물을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에 저작권 보호기술인 DRM을 적용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디지털 형태의 보고서
			정부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발간한 디지털 형태의 보고서
	전자신문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무가지 등 신문사에서 PDF, HTML, XML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전자사보		단체,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전자사보 등
	e-카탈로그		상품 매뉴얼, 보험사 약관 등 전자책 툴을 활용한 전자 카탈로그
음악	Full Track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벨소리, 통화연결음		모바일 기반 전화 벨소리, 통화연결음
방송	뉴스		방송사 제작 뉴스 콘텐츠
	교양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교양 프로그램 콘텐츠
	스포츠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스포츠 콘텐츠
	드라마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드라마 콘텐츠
	연예, 오락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연예, 오락 프로그램 콘텐츠
	교육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영상	영화		디지털 형태로 인코딩된 영화 콘텐츠
	애니메이션		2D나 3D 형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공연물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한 콘텐츠
이미지			예술, 제품, 환경, 패션, 공예 등에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서체 등
이러닝			유·무선방송·통신망이나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교육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
웹페이지			유·무선 기반 하의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
게임	온라인 게임		온라인상에서 클라이언트가 통신망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접속, 다수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게임
	모바일 게임		이동성과 휴대성을 가진 개인용 기기 즉, 핸드폰, PDA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
S/W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와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www.kci.go.kr

전자출판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중 종이책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출판물 또는 이전에는 종이책 형태로 제작되어 이용된 출판물 중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출판물로 한정하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자책,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전,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전자사보, e-카탈로그로 분류하였다. 전자책은 제작형태 및 사용매체에 따라 컴퓨터 기반 e-Book, 오디오북, 모바일북으로 세분화하였다.

음악은 유·무선 기반 하에서 유통되는 디지털화된 음악자료를 의미한다. 음악은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다운로드할 수 있는 Full Track과 모바일 기반 전화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분류하며, 배경음악(BGM ; Background Music)은 Full-Track으로 분류한다.

방송은 공중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방송용 디지털 콘텐츠 중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이용되며,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을지라도 제작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은 영화는 영상으로 별도 분류한다.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 중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이용되며,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단, 제작 초기단계부터 방송사가 참여하여 방송용으로 제작한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한다. 또한 뮤직비디오와 공연물 같이 콘텐츠의 내용이 음원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음악과는 구분하여 영상으로 분류한다.

이미지는 예술, 제품, 환경, 패션, 공예 등에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서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일지라도 동일 주제의 여러 이미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미지군은 전자출판의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한다.

이러닝은 유·무선방송·통신망이나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교육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의미한다.

웹페이지는 문자 그대로 유·무선 기반 하의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이미지, 이러닝,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웹상의 정보 콘텐츠를 의미한다.

게임은 각종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 핸드폰, PDA, 휴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디지털자료를 의미하며, 보통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 핸드폰이나 PDA 등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합하여 이르는 말로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한다.

www.kci.go.kr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요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해외 각 국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관련 납본법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출판지, ②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우선순위, ③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④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⑤ 납본 자료의 수집, 증표 교부, ⑥ 납본 주체, ⑦ 납본 기관과 의무, ⑧ 납본 주체의 납본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거절, ⑨ 납본된 자료의 갱신, 폐기, ⑩ 납본된 자료의 하드카피 제공, ⑪ 납본된 자료의 다운로딩과 저장, ⑫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⑬ 납본의 효력 날짜, ⑭ 납본 자료의 이용, ⑮ 납본의 보상, ⑯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Ⅳ.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출판지

출판지는 납본 대상자료 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기준이다. 인쇄자료는 물론 오프라인 디지털자료는 그 저작이 출판된 위치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없지만,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출판지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출판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출판지와 관련하여 자국에 납본되어야 할 자료를 정의함에 있어 덴마크는 납본법 제3장 제8조에서 "① 덴마크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것, ② 기타의 인터넷 주소(덴마크로 특정하지 않은 주소)로부터 출판되었으나 덴마크 대중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8] 핀란드는 납본법 제1장 제2절 2항과 3항에서 "① 핀란드에서 배포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과 전자문서, 또는 핀란드에서 배포될 목적으로 외국에서 특별히 각색된 인쇄물과 전자문서, ② 일반 네트워크상에서 대중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자료로 핀란드에서 처음 이용되거나 핀란드 대중이 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자료"라고 명시하였다.[9] 뉴질랜드는 도서관법 제4장 제29조에서 "뉴질랜드에서 제작되거나 인쇄된 문서, 또는 뉴질랜드 거

8) Denmark,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5. 〈http://www.bs.dk/content.aspx?itemguid=%7B332484E6-A5B1-4CEE-B953-059843182050%7D〉 [cited 2008. 11. 17].

9) Finland, Legal Deposit Act, 2003, p.1. 〈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Julkaisut/2003/liitteet/opm_132_Legal_Deposit_Act.pdf?lang=en〉 [cited 2008. 11. 17].

www.kci.go.kr

주자나 주된 영업소가 뉴질랜드인 자가 뉴질랜드 밖에서 제작, 인쇄한 문서"라고 명시하였으며,[10] 우리나라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3조[11]에서 명시하고 있다.

출판지는 인터넷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제외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인터넷 자료의 출판지는 우리나라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 즉 .kr 도메인을 가지는 주소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관리 하의 IP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공표를 목적으로 발신된 주소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넷 자료의 출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제①항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인터넷 자료를 제외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예를 들면, 전자책,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의 출판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에서 배포될 것을 주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와 우선순위

가.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

뉴질랜드는 납본 시행령에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로 "① 납본대상 인쇄자료와 동등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자료, ② 납본대상 인쇄자료 버전의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자료, ③ 멀티미디어 CD-ROM, ④ CD/DVD 자료, ⑤ 지도, ⑥ 음악 녹음, ⑦ 이야기 책, ⑧ 다큐멘터리,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명시하고 있으며,[12]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로 "① 납본 대상이 되는 인쇄 출판물과 동등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문서, ② 웹사이트, 웹페이지, 블로그, ③ 장면 또는 짧은 영상, ④ 전자책, 이야기 책, ⑤ 멀티미디어 CD-ROM"을 명시하고 있다.[13] 캐나다는 온라인 출판물 납본 가이드라인에서 납본되어야 할 온라인 출판물의 유형을 도

---

10)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p.15. 〈http://www.natlib.govt.nz/catalogues/library-documents/nlnz-act-03〉 [cited 2008. 11. 17].

1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3조(납본의 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납본대상은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2) 국내에서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디지털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료

12)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 2006, p.8. 〈http://www.natlib.govt.nz/downloads/Legal_Deposit_Code_of_Practice.PDF〉 [cited 2008. 11. 17].

13) Singapore National Library Home page, 〈http://deposit.nl.sg/LDNet-web/faces/voluntaryDeposit.jsp;jsessionid=F881B709F700BDDEDA897B4FE9C43A5F〉 [cited 2008. 11. 17].

www.kci.go.kr

서, 잡지, 연간보고서, 연구논문, 학술저널 등이라고 간단히 명시하고 있으며,[14]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부록에 납본대상 디지털자료의 종류로 "① 전자도서, ② 전자잡지, ③ 데이터베이스(서지정보를 정보 네트워크로 유통하는 출판목록, 색인지, 초록지 등을 CD-ROM으로 제공), ④ 웹정보자료(인터넷상의 다종다양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⑤ 인터넷 링크자료(서지정보나 원문정보의 소재처, 즉 URL 링크), ⑥ 기타 전자형 프리프린트, 메일링 리스트, 토론그룹, 전자우편, NetNews, List server 등, ⑦ UCC(동영상), mp3, 각종 전자문서(워드, pdf, jpeg 등)"를 명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납본법에서는 납본 대상자료로 전자출판물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납본 대상은 대부분 오프라인 및 정적 디지털자료가 대부분이고, 해외 주요 국가의 납본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동적 디지털자료로는 웹페이지, 전자책, 블로그 등이 고작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제②항에서 납본대상 디지털자료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록에 딸려있는 비용추계서에 법률에 의한 납본 대상을 7가지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대상은 〈표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및 정의에서 제시한 모든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납본의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자료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WARP, 호주의 PANDORA, 스웨덴의 Kulturarw3 프로젝트 등에서 이미 실시하여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수집이다. 미국의 MINERVA, 호주의 PANDORA, 일본의 WARP는 수많은 대상 자료 중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일부를 선정한 후 수집하는 선택적 수집을 하고 있고, 스웨덴의 Kulturarw3, 핀란드 국립도서관, 스웨덴 왕립도서관의 경우는 웹 로봇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망라적 자동수집을 하고 있다.

인터넷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방법에는 선택적 수집방법과 망라적 수집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ac, re, go, or 등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집을 먼저하고,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다음 순서는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납본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

14)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ome page, 〈http://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003008-1000-e.html〉 [cited 2008. 11. 17].

www.kci.go.kr

3.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핀란드는 납본법 제2장 제4절 제4조에서 "① 출판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② 사소한 정보, 시각적, 청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③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와 다르지 않은(바뀌지 않은) 재인쇄물, ④ 단지 외국에서만 출판되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⑤ 점자물, ⑥ 그래픽 아트의 원판"을 납본 제외대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15]

CENL/FEP(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자발적 납본체계의 개발 및 확립에서는 "①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와 가장 연관 있는 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은 전자출판물, ② 국가적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지 않는 전자출판물, ③ 동일한 출판사가 이미 납본한 인쇄 출판물과 중복되는 전자출판물, ④ 한 조직 내에서 내부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출판된 전자출판물,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등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 기관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전자출판물"을 납본 제외대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16]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7조(납본 제외 사유)에서는 "①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경우, ③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④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⑤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디지털자료는 납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출판분야 단체의 경우 현재 납본 제외대상 자료는 없지만 DB화 되어 있고 시스템이 결합된 패키지의 경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음악분야 단체의 경우 발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방송분야 단체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영상분야 단체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제외대상 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 제외 사유를 확대하여 제시하면 ① 우리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은 자료, ②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경우, ④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등 손실을 정당하

15) Finland, *op. cit.*, p.3. [cited 2008. 11. 24].

16) CENL/FEP,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2005.
〈http://www.nlib.ee/cenl/docs/05-11CENLFEP_Draft_Statement050822_02.pdf〉 [cited 2008. 11. 24].

www.kci.go.kr

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⑤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⑥ 내부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출판된 자료, ⑦ 동일한 출판사가 이미 납본한 인쇄 출판물과 중복되는 자료, ⑧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자료, ⑨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경우 등이다. 제⑦항의 경우, 논의의 여지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인쇄버전과 전자버전이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 별개의 판으로 간주하여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17] 핀란드, CENL/FEP의 경우 이미 납본한 인쇄 출판물과 중복되는 전자출판물은 납본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쇄출판물과 중복되는 디지털자료도 항구적 보존의 경제성, 이용편의성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납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가. 납본 포맷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납본 포맷에 대하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현재 출판된 또는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보존을 위하여 검증된 보존 포맷으로 출판물을 재 포맷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홈페이지상에 명시하고 있으며,[18] CENL/FEP는 "전자출판물은 연관된 소프트웨어, 매뉴얼, 자료와 더불어 공중이 이용 가능한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하며, 납본 포맷을 선택할 수 있을 경우 보존 요건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과 출판사간 별도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9] 우리나라의 저작권 소유・유관 단체의 이해당사자들도 현재 서비스 중인 포맷으로 납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CENL/FEP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포맷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 되어야 한다. 납본 포맷을 선택할 수 있을 경우 보존을 염두에 두고 납본 주체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존 목적으로 납본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재 포맷도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출판 자료의 경우 XML, PDF, HTML, HWP, DOC, EXE, 음악자료의 경우 MP3, 방송자료의 경우 WMV, WMA, 영상자료의 경우 AVI, MPEG 포맷이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이다.

나. 납본 시점

핀란드의 납본법 제2장 제4절 제6조에서는 "납본은 각 인쇄물과 전자문서가 제작된 각 분기가

17) 윤희윤, 전게서, p.200.
18) Singapore National Library Home page, 〈http://deposit.nl.sg/LDNet-web/faces/voluntaryDeposit.jsp;jsessionid=F881B709F700BDDEDA897B4FE9C43A5F〉 [cited 2008. 11. 26].
19) CENL/FEP, *op. cit.*, [cited 2008. 11. 26].

www.kci.go.kr

종료된 후 3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은 핀란드에 수입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20] CENL/FEP에서는 납본 시점에 대하여 "전자출판물의 납본 시점은 그 나라 인쇄출판물의 납본 시점에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할 것을 권장한다. 상업적, 경제적, 기술적 이유가 있을 경우 납본에 대한 기한 연장 또는 다른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해 당사자들은 납본 효력 날짜로부터 30일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방송분야 단체 중 한 곳은 방송 후 수일 안에 납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납본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0조에서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도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쇄출판물과는 달리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적, 경제적, 기술적 이유에 의한 기한 연장 또는 다른 기준을 납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음악자료의 이해 당사자는 발매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에 별도의 구속력 있는 기관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납본 부수

핀란드는 납본법 제2장 제4절 제1조 4항에서 "전자문서는 1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22]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자료의 납본)에서는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핀란드와 CENL/FEP에서 제안하는 1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5. 납본자료의 수집, 증표 교부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온라인 제출도구인 Online Deposit,[23] 이메일,[24] 전자메일링 리스트 등을 이용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25] 또한 홈페이

20) Finland, *op. cit.*, p.3. [cited 2008. 11. 26].
21) CENL/FEP, *op. cit.*, [cited 2008. 11. 26].
22) Finland, *op. cit.*, p.2. [cited 2008. 11. 28].
23) 〈http://www.natlib.govt.nz/onlinedeposit〉.
24) electronic-legal-deposit@natlib.govt.nz
25) 〈http://www.nl.sg〉.

www.kci.go.kr

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방법을 자동 수집에 의한 납본, 의무적(또는 제도적) 납본, 자발적 납본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은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공표되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집하는 방법이고, 의무적 납본은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자료를 온라인 출판한 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신함으로써 납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납본은 납본대상이 아닌 자료를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납본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자료의 수집에 있어 경우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인터넷에 제한 없이 공표되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자동수집은 망라적 수집보다는 선택적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수집에 의한 망라적 수집의 경우, 많은 위법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지화면과 사진 등도 허락받지 않은 것들이 다수 유통될 수 있고,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이용자가 이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의무적 납본의 경우, 납본 주체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납본이 가능하다. 하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신하여 그 컴퓨터 서버의 기억장치에 복제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부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납본 기관은 사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납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납본 주체는 납본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네트워크 환경에 의한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납본 주체는 납본 기관에 납본 대상물을 기록 매체물에 고정하여 30일 이내에 직접 납본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은 즉시 당해 온라인출판자에게 납본된 디지털자료에 부착하는 식별자가 포함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0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증표 교부)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6. 납본 주체

핀란드는 납본법 제2장 제5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납본 주체에 대해 "① 인쇄물과 전자문서는 그 제작자, ② 인쇄물과 전자문서가 하나로 출간되는 경우에는 출판자, ③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출판자, 출판자가 핀란드에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는 수입자"로 명시하였으며,[26] 덴마크는 납본법 제3장 제9조에서 납본 주체에 대해 "덴마크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26) Finland, *op. cit.*, p.3. [cited 2008. 12. 4].

www.kci.go.kr

주소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납본 의무는 자료가 출판된 인터넷 주소 등록자에 속한다. 국외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출판물은 출판자가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7] 캐나다는 온라인 출판물 납본 지침에서 납본 주체에 대해 "납본은 출판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출판자는 캐나다에서 출판물을 이용가능하게 만든 사람 또는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고, 출판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 협회, 정부부처 및 기관, 온라인 출판물의 교역 및 연속간행물 출판자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28]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은 제작자가 납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저작자가 직접 녹음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하는 디지털 싱글의 경우 납본 주체는 저작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음악분야 단체가 제시하였으며, 영상분야 단체는 온라인상에서 복제 및 공중송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납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납본 주체에 대해 여러 국가의 전통적인 납본법령에서는 출판사로 명시하거나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도 그리고 향후에도 인쇄자료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한 출판사가 납본의 주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다양한 주체(저자, 출판사, 생산자, 인쇄소, 지적소유권자, 수입업자 등)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하므로 납본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29]

국내 웹 사이트의 경우 납본의 의무는 인터넷 주소 등록자가 그리고 국외 웹 사이트의 경우 출판자 또는 제작자가 의무를 져야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주소 관리자는 납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전자적 형태의 인터넷 주소 목록과 등록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자출판, 음악, 방송, 영상 등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는 출판자 또는 제작자가 납본의 의무를 져야한다. 외국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도 역시 출판자 또는 제작자가 납본 의무를 지며, 이들이 국내에 없을 경우는 수입자가 대신하여 납본의무를 져야한다. 납본 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 전에 제작한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주체가 납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납본 기관과 의무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 기관은 단일기관으로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국가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

27) Denmark,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5. 〈http://www.bs.dk/content.aspx?itemguid=%7B332484E6-A5B1-4CEE-B953-059843182050%7D〉 [cited 2008. 12. 4].

28)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ome page, 〈http://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003008-1000-e.html〉 [cited 2008. 12. 4].

29) 윤희윤, 전게서, p.196.

www.kci.go.kr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치・운영)에서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의 납본 기관은 국가도서관이다. 이것은 납본의 목적이 국가도서관의 사명 및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도서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납본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도서관이나 국가문서관 등을 납본처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한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대학도서관, 의회도서관, 지역의 국립도서관 등을 납본처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기관을 특수자료(영화필름, 녹음자료, 라디오/TV 프로그램)의 납본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납본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는 시점에 이미 많은 특수자료를 소장하여 납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거나, 이들 자료를 취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30]

우리나라에서 납본규정은 현재 '도서관법'을 비롯한 10개의 법령에 납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납본 기관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서도 디지털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보존, 서비스를 위하여 납본 기관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 제②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 기관의 의무[31]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8. 납본 주체의 납본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거절

일본은 국회도서관의 '인터넷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제도화' 제2절(수집거부・삭제신청)과

30) *Ibid.*, pp.196-197.

3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무적 납본) ②항
②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2. 디지털자료의 납본・활용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한민국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5.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국내도서관과의 협력
6. 디지털자료의 구제적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디지털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kci.go.kr

제5절(인터넷 제공거부 신청)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5조[32]와 제22조[33]에서 납본 주체의 납본거절과 납본된 자료의 이용거절을 규정하고 있다.

납본자료의 수집에서는 그 방법을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의무적 납본, 자발적 납본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자발적 납본의 경우 납본 주체는 납본 기관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납본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터넷 정보의 저작자, 저작권자, 발신자는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의한 인터넷 정보의 수집을 거부 또는 수집된 당해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수집이 거부된 인터넷 정보를 저장하여서는 안되고, 수집된 인터넷 정보의 삭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삭제해야 한다.

의무적 납본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 주체는 납본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의무적 납본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납본되는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9. 납본된 자료의 갱신, 폐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9조(보관 및 폐기권한) ①항에서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디지털자료는 수시 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별로 축적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IFLA의 납본 입법 지침 제7장 제5절 ②항에서는 동적인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료의 출판 및 생산이 중단되었을 때 '스냅샷(snapshot)' 납본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34] 갱신은 '스냅샷'

3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무적 납본) ③항과 ④항
③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의무적 납본 시, 당해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의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납본되는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립디지털도서관은 ③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당해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

3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2조(이용 거절의 의사 표시)
①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 출판자는 납본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당해 디지털자료의 관외송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이용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당해 디지털자료를 관외송신 할 수 없다.

34) IFLA Home page, 〈http://www.ifla.org/VII/s1/gnl/chap7.htm〉 [cited 2008. 12. 10].

www.kci.go.kr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 및 갱신되기 전 자료의 백업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일본은 수집한 데이터가 동일한 URL에서 얻은 데이터일 경우, 이를 덮어쓰지 않고, 시계열(時系列)로 축적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9조(보관 및 폐기 권한) ③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폐기와 관련된 조항 즉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새로운 버전으로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있는 경우 이전 자료들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하여 폐기할 권한을 갖는다'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납본된 자료의 하드카피 제공

뉴질랜드는 국가도서관법 제4장 제31조 3항에서 "장관은 관보 고시를 통하여 국립도서관 사서에게 그의 재량에 따라 인터넷 문서의 복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35] CENL/FEP에서는 납본된 전자출판물 하드카피 제공에 대하여 "전자출판물의 인쇄는 인쇄출판물의 인쇄에 적용되는 최대한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개인적인 학문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 도서는 1장(章), 잡지는 한 호에서 한 논문, 전체 콘텐츠의 5%이내의 범위이다. 또한 CENL/FEP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특수 출판물의 경우, 적용되는 인쇄의 최대한도[예를 들어 5%]는 출판사에게 과도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납본 주체와 출판물로부터의 인쇄 최대한도는 협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6]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제공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전자출판분야와 영상분야 단체의 경우, 어떠한 하드카피 제공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음악분야 단체의 경우 1절, 방송분야 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나 교육 및 연구 자료에 한하여 화면 스틸 컷과 30초 이내의 영상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제공은 인쇄출판물의 하드카피에 적용되는 최대 한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특수 출판물의 경우, 하드카피 최대한도는 납본 주체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11. 납본된 자료의 다운로딩과 저장

CENL/FEP에서는 이용자가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다운로딩, 저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35) New Zealand, *op. cit.*, p.17. [cited 2008. 12. 10].
36) CENL/FEP, *op. cit.*, [cited 2008. 12. 10].

www.kci.go.kr

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또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다운로딩과 저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7] 국립디지털도서관 관내, 관외, 관간 다운로딩과 저장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의 공통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새롭게 추가될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관외, 관간 다운로딩은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접근 및 접근제한에 대하여 전자출판분야 단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하나,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방송분야 단체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하나, 정보소외계층의 관외 이용은 국가기관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세부내용은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12.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적 저장매체의 물리적 보존성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납본 기관은 보존 목적에 한하여 전자적 저장매체에 담겨진 콘텐츠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다른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8조[38]에서는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출판분야 단체는 백업 시스템에 의한 백업만 허용하며, 보존을 위해서는 재 납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음악분야 단체는 기존 파일 폐기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고 하였다. 방송과 영상분야 단체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의 보존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납본 기관은 개별 출판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의 보존을 조건으로, 보존 목적만을 위하여 다른 매체에 출판물을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납본 기관은 복본을 준비하고 재생하며, 기술변화에 맞추어 자료를 변환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해외의 납본법 관계법령은 국가도서관으로 하여금

37) CENL/FEP, *op. cit.*, [cited 2008. 12. 11].

38)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8조(품질관리 및 원본성 보존 등)
① 납본된 디지털자료는 온라인출판된 상태대로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변형할 수 있으나 변형된 자료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②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③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완전한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

www.kci.go.kr

납본자료의 복본생산(포맷변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납본법령에는 보존용 디지털출판물의 복사, 다운로드, 포맷변형, 재구성과 가공, 마이그레이션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8조의 내용은 납본된 자료의 보존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13. 납본의 효력 날짜

납본의 효력 날짜는 납본 관련 법률의 효력 발생일과 납본의무 발생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법률에서 효력 발생일을 적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납본의무 발생일은 생성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를 규정하는 요소로, 납본의무 발생일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분야 단체는 음반 발매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방송분야 단체는 홀드백이 끝난 시점, 영상분야 단체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발생일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 발생일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여 추후에 별도의 구속력 있는 기관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4. 납본 자료의 이용

캐나다는 납본된 온라인 출판물을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 서버 및 LAC의 전자 컬렉션[39]에서 처리하는데 이때, 출판물을 납본한 자는 접근 수준에 있어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 접근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판물을 다운로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제한으로 이용자는 출판물의 다운로드, 인쇄 등을 할 수 없으며 오직 LAC 건물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수집한 인터넷 자료의 이용은 몽크라고 불리는 관내의 독립형(stand-alone) 단말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유료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1조[40]에서도 납본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명시

39) 〈http://www.collectionscanada.gc.ca/electroniccollection〉.

40)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1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
①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내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이하 '관내송신'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자동수집에 의한 납본)부

www.kci.go.kr

하고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분야 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하나,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방송분야 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하나, 정보소외계층의 관외 이용은 국가기관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세부내용은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음악과 영상분야 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외를 불문하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41]

〈표 2〉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용범위

설문대상	이용자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반이용자	일반이용자	240	99.59	192	79.67	234	97.10	97	40.25
	정보소외계층	240	99.59	204	84.65	238	98.76	153	63.49
정보소외계층	정보소외계층	17	68.00	20	80.00	16	64.00	16	64.00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하여〈표 3〉과 같이 ①자유접근, ②접근제한, ③상업용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터 제15조(의무적 납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②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디지털자료 중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으로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이하 '관외송신'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이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지역의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정보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281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결측치가 발생한 15부를 제외한 266부(일반이용자 241부, 정보소외계층 이용자 2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www.kci.go.kr

〈표 3〉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구 분	관내 이용		관간 이용	관외 이용
	독립형단말기	관내네트워크		
자유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	○	○	○	○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X	X	X	X
상업용 온라인 디지털자료	○ (납본보상금 대체)	△ (동시 이용자 수 고려)	△ (저작권법 31조 고려)	△ (pay-per-view)

(O: 이용가능, X: 이용불가, △: 협의대상)

비매품 등의 자유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관내 이용, 관간 이용, 관외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납본은 되었지만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변경 또는 납본 주체에 의한 이용 거절 등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관내, 관간, 관외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다.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변경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납본 주체에 의한 이용 거절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는 향후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납본 주체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상업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는 납본 주체와의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 상업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관내 이용 시에는 독립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독립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납본 주체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지만, 관내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동시 이용자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납본 보상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서관간 이용에서는 저작권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외 이용 시에는 B2C(business-to-consumer) 방식의 건당 비용 지불(pay-per-view)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표 3〉에서 X: 이용불가, △: 협의 대상 자료로 구분이 된 납본 자료는 납본 시 성격에 따라 납본 주체가 이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용가능 연도(예를 들면, 납본과 동시 이용, 납본 후 5년 후 이용, 납본 후 10년 후 이용, 납본 후 50년 후 이용, 저작자 사후 70년 이후 등), 이용가능 대상[(전 세계인, 전 국민, 지역민, 특정단체(도서관 등), 특정인(장애인, 다문화인 등)] 등에 대하여 납본 주체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납본 기관과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자동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취약계층 이용 시 보상방안도 논의되어져야 한다.

www.kci.go.kr

15. 납본의 보상

캐나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각국의 법령은 아날로그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납본도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납본에 소요되는 비용도 납본 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법에 의해, 출판물을 발간한 자는 출판 1주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신간 자료 2부를 LAC에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서관 납본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에서 출판사는 출판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1개월 이내에 한 부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무상납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본을 위한 사본제작비용이 고액이어서 납본 주체에게 부담이 될 경우 신청에 의해 제작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42]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해서도 무상 납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납본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보상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정가의 100%를 제시하거나 추후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콘텐츠와 시스템이 결합된 패키지 제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콘텐츠와 시스템을 합한 금액을 정가로 인정해 줄 것과 납본에 따른 비용을 납본보상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납본은 그 나라 출판자의 의무이고 또한 출판비용에 납본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본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정중인 법률(안)이나 도서자료 납본의 경우를 고려하여 볼 때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에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서 전자출판물의 규정(형태, 내용, 기록사항 등)을 참고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가가 있는 경우, 보존을 위한 납본과 더불어 관내 이용을 전제로 정가보상이나 적정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보존만 할 경우에는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들이 관내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는 정가의 100% 또는 양자 간 협의 하에 적정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납본 기관이 예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임의적인 가격으로 판단될 경우, 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에는 정가 책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납본보상금을 노리고 실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정가를 매겨 납본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처 방안으로 우선

4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보상금 비용 산정기준 개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p.50.

www.kci.go.kr

무 보상을 전제로 납본을 받아 보존한 후,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그 유통가격으로 보상한 후 관내에서 이용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보다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납본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격이 미결정된 자료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에는 보존과 이용에 관계없이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납본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든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든 납본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납본비용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6.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핀란드는 납본법 제7장 제23절 제3조에서 "연방국은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본 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벌금형을 정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43] 우리나라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5조[44]에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적 납본의 경우,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핀란드 납본법에서는 벌금형을 정하여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앞서 납본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등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자출판물 또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경우 1999년 말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비인쇄 출판물의 납본을 위한 시행령(Code of practice for the voluntary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05년 CENL/FEP의 '전자출판물을 위한 자발적 납본체계의 개발 및 제정을 위한 문서(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43) Finland, *op. cit.*, p.10. [cited 2008. 12. 15].

4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5조(과태료)
①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www.kci.go.kr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s)로 발전되었다.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는 납본법에 이미 디지털자료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ASIS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디지털 문화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IFLA의 납본 입법을 위한 지침, CENL/FEP의 지침,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의 법률(안)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납본자료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법조계, 저작권계, 학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제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6개 납본요소에 대한 지침은 국립디지털도서관과 납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호협력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